

브루나이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p>본 양허표에 포괄된 전 분야</p>	<p>3) 상업적 주재를 수립했거나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관련 조치는 약속 안함.</p> <p>4)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급에 해당하는 기업내 전근자의 입국 및 일시적 주재와 관련된 조치 외에 약속 안함.</p> <p>기업내 전근자란 아래 정의된 대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설립된 자회사·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이나 그 이상 브루나이 다루살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의 하나인 자:</p>	<p>3) 기존 상업적 주재 관련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공기업 이사 중 과반수, 사기업 이사 중 과반수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함.</p> <p>브루나이 다루살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되고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사업장을 둔 모든 기업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거주하는 한 명 이상의 대리인을 확보하여 그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송달 또는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p> <p>4) 시장접근 란에서 언급된 자연인 범주에 관한 조치 외에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관리자: 주로 기업, 혹은 기업내 특정 부서를 통솔하는 자,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승진 및 휴가 승인 등)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전문직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는 일선 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일선 감독자는 관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관리자에 해당되지 않음.</p> <p>(b) 임원: 주로 기업의 관리 및 경영을 통솔하고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상급 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관리 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p> <p>(c)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는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기술, 경영 등에 독점적 지식을 보유한 자. (전문가 범주에는 공인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p> <p>기업내 전문가는 임국시 3년간 체류 가능하며 1회당 최대 2년간 추가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기간을 포함한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 분야별 구체적 약정</p> <p>1. 사업 서비스</p> <p>A. 전문직 서비스</p> <p>b) 감사 서비스 (CPC 862)</p>	<p>1) 외국에 근거를 둔 감사관은 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지 계정을 감사할 수 있음.</p>	<p>I) 허가받은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A. 영어로 기재된 제정의 경우</p> <p>1. 다음 기관의 준회원 자격</p> <p>(a) 공인 회계사 협회(호주,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p> <p>(b) 공인 회계사 조합</p> <p>(c) 호주 회계사 협회</p> <p>(d) 뉴질랜드 회계사 협회</p> <p>B.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제정의 경우:</p> <p>(a) 위 A(a)에 기재된 기관의 준회원 자격, 그리고,</p> <p>(b)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근거</p> <p>- 허가받은 감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감사 경험을 보유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외국에 근거를 둔 감사관은 재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지 계정을 감사할 수 있음.</p>	<p>2) 허가받은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A. 영어로 기재된 계정의 경우</p> <p>1. 다음 기관의 준회원 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인 회계사 협회(호주,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아일랜드, 뉴질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 (b) 공인 회계사 조합 (c) 호주 회계사 협회 (d) 뉴질랜드 회계사 협회 <p>B.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계정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위 A(a)에 기재된 기관의 준회원 자격, 그리고, (b)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는 근거 <p>- 허가받은 감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감사 경험을 보유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감사회사는 개인 사무소 또는 합명 회사로만 설립 가능하며 회사명은 등록기관 (Registrar of Business Names) 에 등록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회사의 최대 파트너 수는 20명. - 파트너는 개인, 브루나이 기업 및/또는 외국 기업의 지사로만 구성 가능. - 주 거주지 또는 단독 거주지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이어야 함.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 현지 인력 채용 및 개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h) 의료 및 치과 서비스 (931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 데이터 포포세싱서비스 (d) 데이터베이스서비스 (CPC 841, 842, 843, 844, 845+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전인력 없는 임대/리스 서비스			
b) 운전인력 없는 항공기 임대/리스 서비스 (CPC 83104)	1) 항공기는 인증을 거쳐야 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만입은 인프라의 수용능력에 기반하여 승인 또는 제한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 약속 안함. (a)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만, 또는 (b) 브루나이인의 통제 하에 있는 총판매 대리점 지정을 통해서만, 그리고, (c) (a)와 관련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 내의 일정한 주소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b)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된 사항에 따른 기술적 외에는 약속 안함. - 지역 가용성 검사 - 브루나이인 훈련생 수 명기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허가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a) 거주지 요건 (b) 등록 요건)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 서비스			
1. 국내통신 서비스 (a)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국내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는 정부기관인 JTB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안함.	부속서 참조. 국내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의 독점기간은 JTB의 민영화 후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것임. 정부는 이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추가 서비스 공급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책 검토를 수행할 예정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국제통신 서비스 (a) 공중교환 음성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국제 공중교환 음성진화 서비스는 정부 기관인 JTB 및 민간 기업인 DSTCom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두 사업자의 독점 기간은 2010년에 만료됨. 정부는 이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추가 서비스 공급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3. 이동통신 서비스 (a)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1) 허가받은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름.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AMPS 및 GSM 기술을 사용하는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는 DSTCom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AMPS 및 GSM 이외의 기술을 사용한 공중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허가의 발급 여부는 정부가 2010년에 공익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러한 허가 발급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전신 서비스 (CPC 752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발부 국내 공중교환 음성전화 서비스는 정부기관인 JTB에 의해 독점 제공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텔렉스 및 전신 서비스의 독점기간은 JTB의 민영화 이후 최대 10년까지 연장될 것임. 정부는 이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추가 서비스 공급자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책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CPC 7529**)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전자 메일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전자 데이터 전송(EDI)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l)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지장·진송 및 검색 포함)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음성메일 서비스 (CPC 7523*)	1) 서비스 공급자는 정부 텔레콤 관할청(National Telecom Authority Control) 산하 공중 텔레콤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소관 규제기관 및 브루나이 다루살람 회사법에 의해 허가 발부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건설 서비스</p> <p>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다음을 포함한 분야 및 업종:</p> <p>a. 일반 빌딩 건설작업 (CPC 512)</p> <p>b. 일반 토목공학 건설작업 (CPC 513)</p> <p>c.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 516)</p> <p>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p> <p>e. CPC 515</p> <p>광업 관련 서비스 제외</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i) 외국인 지분참여는 50%를 초과할 수 없음. ii) 외국인은 기업 총 고용인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음. iii) 회사는 개발부에 등록되어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7. 금융 서비스</p> <p>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p> <p>(a) 직접 보험(생명 연금, 소득보상 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서비스 포함 (CPC 8121))</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직접 보험(비생명) 연금, 소득보상 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및 신원보증보험 계약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보증보험 서비스 포함 (CPC 8129)</p>	<p>1) 약속 안함.</p> <p>2) 자동차 제 3자 책임보험과 근로자 상해보험 등 강제보험은 브루나이의 허가받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음.</p> <p>3)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재보험 및 재보험(생명 및 비생명) (CPC 81299*)</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보험 중개서비스 구성 보험 중개 (CPC 8140)	1) 약속 없음. 2) 보험 중개회사는 미등록 보험회사의 대리 행위를 할 수 없음. 3) (i) 브루나이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직접 보험을 중개하는 경우, 재무부(MOF)의 승인이 필요함. (ii) 보험 중개인, 보험 인수인 및 보험 관리자는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다음의 보험 부수 서비스: (a) 지문 (보험회사가 보험업계에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b) 계리적 위험평가 (c) 위험 관리 (d) 해상 손실 사정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9. 관광서비스			
(a) 관광 숙박시설 i) 중저가 호텔 ii) 리조트 호텔/별장식 호텔 (CPC 6411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기업에서 브루나이인 총 소유 지분이 30%를 초과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a) 국제 여객 운송 (CPC 721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b) 국제 화물 운송 (CPC 72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C. 항공 운송 서비스			
(c) 승무원 있는 항공기 임대 (CPC 734)	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항공기는 인증을 거쳐야 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반입은 인프라의 수용능력에 기반하여 승인 및 제한됨. 2) 제한 없음. 3) 다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a) 대표 사무소를 통해서는, 또는, (b) 브루나이인의 통제 하에 있는 총판매 대리점 지정을 통해서는, 그리고, (c) (a)와 관련하여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내 일정한 주소가 요구됨. 4) (b)와 관련하여 아래 기재된 사항에 따른 기술적 제외는 약속 안함. - 지역 가용성 검사 - 브루나이인 훈련생 수 명기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a)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P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첨부

적용범위

아래 사항은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의 규제 기본틀에 관한 정의 및 원칙에 관한 것이다.

정의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a)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a)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 보호장치

1.1. 통신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관행 방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1.2. 보호장치

1.1.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a)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b)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c)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본 항은 양허한 분야에 한해, 한 공급자의 이용자들이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간 접속에 적용된다.

2.2. 상호접속을 위한 요건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a) 비차별적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제공되어야 한다.
- (c) 요청이 있는 경우,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효율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3.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2.4.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2.5. 상호접속의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 (a) 언제든지, 또는
-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 기간 후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이러한 조건 및 요금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내기관(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 포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허가 기준 공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a)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 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b) 개별 허가 요건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해야 한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되, 특정한 정부 사용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